금융위원회 / 금융감독원	보 도 참 고 자 료		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/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**배포 시**	배포	2022.3.2.(수)
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이 수 영(02-2100-2650)	**담 당 자**	정 훈 사무관(02-2100-2653)
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고 영 호(02-2100-2660)		홍연제 사무관(02-2100-2663)
	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 조 철 (02-3145-7010)		손기숙 팀장(02-3145-7030) 이상민 팀장(02-3145-7035)

제 목 : NH투자증권, 하나은행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

■ 금융위원회는'22.3.2(수) 제4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 및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, 과태료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■ 금번에 의결된 NH투자증권에 대한 조치는 「자본시장법」 위반사항에 대한 것으로, 「금융회사지배구조법」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추후 심의될 예정입니다.

1. 조치개요

□ **금융위원회**는 금일 '22년 제4차 정례회의에서

○ **NH투자증권** 및 **하나은행**에 대한 **금감원 검사결과** 발견된 **위법사항**에 대해 **업무 일부정지, 과태료**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참고 : 진행경과

❶ **금융감독원**은 NH투자증권 및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**제재심의위원회를 총3회**('21.2.19 ~ 3.25) 개최하여 조치안을 심의

❷ **증권선물위원회**는 **NH투자증권**에 대해 **3회**('21.8.18 ~ 12.1)에 걸쳐 **「자본시장법」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**을 심의

❸ **금융위 소위원회**는 **NH투자증권**에 대해 **총6회**('22.1.6 ~ 3.2), **하나은행**에 대해 **총4회**('22.1.6 ~ 2.10)에 걸쳐 **검사결과 조치안**을 심의

2. 주요 조치내용

□ **(NH투자증권)** 금융위원회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,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, 투자광고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**「자본시장법」 위반**으로,

○ **기관 업무 일부정지*** **3월, 과태료 51억7천2백8십만원**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* (정지대상)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(사모펀드 신규판매)

□ **(하나은행)**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·관리하는 **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**를 **위반한 행위**에 대해 **「자본시장법」 위반**으로,

○ **기관 업무 일부정지*** **3월**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* (정지대상)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

3. 향후일정

□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**임직원 제재*** 등은 금감원에서 **조치할 예정**입니다.

* (임원) 주의적 경고, 주의 (직원) 정직, 감봉, 견책, 경고, 주의

□ 한편, NH투자증권 관련「금융회사지배구조법」상 **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**에 대해서는,

○ **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** 및 **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** 등을 거쳐 **종합적으로 판단**해 나갈 예정입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